

제1차산업경제위원회
2013.9.4(수) 10:00

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나기성

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3년 8월 23일

나. 회부일자 : 2013년 8월 28일

3. 제안 이유

-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벼 재배 농업인 및 농업재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

4. 주요내용

가. 도지사의 책무(안 제3조)

- 농업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 시책 수립 및 시행

나. 경영안정지원(안 제5조)

- 「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5조와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벼 재배농업인
- 농작물 재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서 농업재해를 입은 농업인

다. 경영안정지원의 특례(안 제6조)

- 시군에서 기금설치나 조례에 따라서 농업인에게 가격안정에 관한 지원금을 지원할 경우 소요 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도비 지원

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안'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벼 재배 농업인 및 농업재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,
- 먼저 조례안의 입안형식인 조례의 필요성, 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 합성, 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,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등을 기준으로 조례의 체계 등을 검토한 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,
- 그동안 조례 제정을 위해 2011년부터 충남, 전남, 전북 등 타 자치단체 현황 조사, 우리 위원회와 간담회 개최, 음성군 사례분석 및 농업인 단체 의견 청취, 농업인단체, 도의회, 공약평가 자문위원 등과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입법예고를 하는 등 농민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이 반영된 조례안으로 판단됨.
- 따라서, '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안'은 어려운 농민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다만,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매년 24억 6천3백만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하였는데 이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.